

일시 : 2016.11.9.(목) 16:30
장소 : 성북배움터(구청 3층)

**- 2016년 11월 (제40차) -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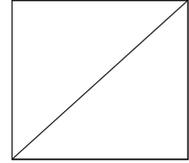
성북구 인권위원회

목 차

1	2016-7호 심의사항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권영향평가 결과	3
2	보고사항	제39차 인권위원회 개최결과	11
3	보고사항	1) 인권위원회 관련 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14
		2) 2016 인권이 살아 숨쉬는 인권교실 만들기	17
		3) 직원인권아카데미(사회복지분야) 실시	18
		4) 인권영향평가 시행 5주년 평가 워크숍 실시 결과	19
		5) 2017년 인권센터 시행계획(고유과제)	20

【공개】

성 북 구
인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6-7호
보 고 연 월 일	2016. 11. 9.(수)

심
의
사
항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 권 영 향 평 가 결 과**

보고자 | 성북구 감사담당관(인권센터)

목 차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5
---	--------------------------------------	-------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성북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기술인력 양성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영세사업장의 생산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다. 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5조~제7조)
- 라. 센터 운영의 위탁 등(안 제8조~제13조)
- 마.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14조~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2)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소상공인지원계획)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별도 첨부 : 붙임자훈 P35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일자리경제과)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지방자치법, 고용정책기본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약기간		
	입법예고	· 2016. 9월중 (20일간) ·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 2016. 10월 예정		
	의회상정	· 2016. 11월 예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일자리경제과	행정7급	안경화	02-2241-3982

「※」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비 고
권리 침해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	
주민 참여	재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	성북구 청년지원 협약체를 통해 조례 제정관련 의견수렴 (‘15.11.27~12.10 /14일간)
구제 수단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6-24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 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구 체 수 단	7.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민 참여	8.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9.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6. 10. 20.)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필요시 별지사용)</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항 목	검 토 의 건	비 고
성북구 패션섬유 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p>[제18조 (위원의 해촉)] 3항</p> <p>‘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로 수정할 것</p> <p>‘심신장애’란 법률적, 심리적으로 해석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가 있는 상태를 총칭하는 말로 장애인차별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p>	

3. 보고사항

제39차 인권위원회 개최결과

1. 개최개요

- 일 시 : 2016. 9. 29.(목) 16:00~18:20
- 장 소 : 성북배움터(구청 3층)
- 참 석 자 : 15명(김경옥, 김은애, 김수정, 김지희, 박다혜, 손민호, 유의선, 윤성봉, 윤정섭, 이경선, 이경환, 이민영, 이진수, 전문수, 하장호)
- 주요안건
 - 제3기 성북구 인권위원회 구성
 - 신규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임원 호선
 -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 조례·규칙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심의(3건)

2. 회의결과

- 인권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결과
 - 위원장 : 박다혜
 - 부위원장 : 하장호
- 조례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외 1건: 원안동의
 -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인권센터 검토 의견 동의
-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 인권센터 시민위원활동 1주년 평가워크숍 개최
 - 공공건축물(장위구립도서관과 문화복지타운) 건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

(부서명 : 주택정책과)

심의대상	심의결과	위원회 의견	수용여부	부서의견	비고
<p>성북구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p>	<p>조정 의견</p>	<p>[제3조 (구성)] 2항 ‘성별을 고려하여’ 를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는 등 구체적인 할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균형적인 성별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됨</p>	<p>미수용</p>	<p>-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관련분야 교수, 건설기술자 등 전문가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 위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건설, 토목분야 등 기술분야에는 여성비율이 적은게 현실이며 현재 신규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기 위해 여성위원 위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임. -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원안으로 개정하고자 함</p>	
		<p>[제11조 (위원의 해촉)] 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로 수정할 것. ‘심신장애’란 법률적, 심리적으로 해석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가 있는 상태를 총칭하는 말로 장애인차별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p>	<p>수용</p>	<p><u>조례에 반영하여 개정</u></p>	

※ 추후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는 위원 위촉이 아닌 해촉에 관한 사유로 판단 근거가 모호하여 인권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수용한다는 구두 의견이 있었음, 상위법의 규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기도 함

3-1) 보고사항

인권위원회 관련 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됨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법 제11조제1항)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행정기관위원회법 제2조제1항)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가 위임·위탁 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공공기관에 파견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청렴 대한민국, 새롭게 시작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나갑니다!

※2016년 9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런 기관들이 포함돼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종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청탁금지법
한눈에 알아보기

세부류의 대상자가 있지!

공직자들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
- 각종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공무수행사인)

-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임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국민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제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힘있는 사람에게 청탁하는 풍조를 개선하려는 건가요?



위 14가지의 유형에 대한 공직자들의 지위·권한 남용

예외사유로 7개 카이드 라인을 제시 하였습니다

- 1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관 인에 처한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 하는 행위
- 6 질의 또는 상담명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설을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행위



부정청탁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 하였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번
감사합니다

이정도
금품이면
괜찮을 겁니다

안돼요!
주어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8가지가 있습니다

- 1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외래·부조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액 범위의 금품등
- 3 정당한 권원(權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정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동성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 8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친분을
숙여하면

괜찮으니
받아주세요

이것이 ~ 금품등 수수예요



동업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과 태 료

직무와 관련하여 대기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들
●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들
● 5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업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들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신고·처리 절차를 알아볼까요?



신고자
법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조사기관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조사

**결과와
조치사항**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징계처분 등
조치

**결과와
조치사항**
조사내용을
신고자에게
등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도 환실히게 책임집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www.kci.go.kr

3-2) 보고사항

2016 인권이 살아 숨쉬는 인권교실만들기

- 연수기간 : 2016. 12. 12.(월)~12. 16.(금)
(15시간, 집합연수)
- 연수장소 : 성북배움터(구청 3층)
- 연수인원 : 인권에 관심 있는 교사 40명(선착순)
- 연수비용 : 무료
- 연수내용

교시 날짜	1교시	2교시
	15:00~16:20	16:30~18:00
제 1일 (12월12일, 월)	인권으로 빗장열기 우진아 (인권강사, 심리운동사)	사회적 쟁점과 인권적 접근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제 2일 (12월13일, 화)	청소년 인권, 나이가 어려서
제 2일 (12월13일, 화)	인권, 교사와 학생이 만날 때 안영신 (인권강사,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홍의표 (신방학초, 교사)
	제 3일 (12월14일, 수)	다양성 시대의 리더쉽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제 4일 (12월15일, 목)	인권친화교실만들기 이은진(발산초, 교사)	
	제 5일 (12월16일, 금)	인권의 새로운 지평 조효제(성공회대 교수)

- 평가 : 80% 이상 강의 참여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6. 11. 21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구청 홈페이지) 작성 후
이메일(may-1@sb.go.kr) 또는 팩스(02-2241-6523)
- 신청문의 : 성북구 인권센터(02-2241-2194)
- 주최 : 성북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3-3) 보고사항

직원인권아카데미(사회복지분야) 실시

- 교육기간 : 2016.11.8.(화)/11.15(화).(총4강, 14:00~18:00)
- 교육장소 : 성북배움터
- 교육수료 : 3강 이상 수료 시 8시간 교육인정(사회복지분야 4시간 인정 포함)
- 교육내용 : “성북구, 인권에 물들다”

회 차	일 시	분 야	내 용	강 사 진	비 고
1	11.8(화) 14:00~ 18:00	인권 감수성	인권감수성 배워보기 : 시민/노동자/공무원 다양한 입장의 인권감수성	배경내(인권 교육센터 들)	
2		인권 행정	‘민원’ 과 ‘인권’ : 다양한 민원과 갈등 상황에 대한 인권적 해법	이묘량(인권 교육센터 들)	
3	11.15(화) 14:00~ 18:00	사회권	인간답게 먹고 살 권리 : 주거, 건강, 노동, 복지에 대한 인권적 이해	미 류 (인권운동 사랑방)	사회복지 분 야
4		인권으로 서의 복지	존엄성을 지켜주는 복지 :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를 만드는 관점과 조건	배경내/이묘량 (인권교육센터 들)	사회복지 분 야

- 교육대상 : 성북구 소속 직원 30명 내외
 - 수강대상 : 동(부서)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명
 - 해당부서 : 동주민센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문화복지국, 보건소 소속 공무원
 - 사회복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하나 관심있는 직원 참여 가능

3-4) 보고사항

인권영향평가 시행 5주년 평가 워크숍 실시 결과

- 일 시 : 2016.10.28.(금) 14:00~16:00
- 장 소 : 다목적홀(성북구청 지하1층)
- 참석대상 : 인권 관련 기관(단체), 광역·기초자치단체 인권 담당자, 일반주민 등
- 세부내용

구분	시간(소요시간)	세 부 내 용	진 행
개회	14:00~14:05	▶ 개회 및 진행 안내	이원하(은평구 인권위원회 위원장)
발제	14:05~14:20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시행 사례	김정아(성북구청 인권센터장)
발제	14:20~14:35	▶ 인권의 제도화와 인권영향평가	김형완(인권정책 연구소 소장)
발제	14:35~14:50	▶ 다른 영향평가와 비교 분석을 통한 인권영향평가의 의미	이정은(성공회대 교수)
발제	14:50~15:05	▶ 인권지표와 인권영향평가	유영수(고대인권센터 연구교수)
발제	15:05~15:20	▶ 인권행정제도로서 인권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강현수(충남연구원 원장)
종합토론	15:20~15:50	▶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폐회	15:20~16:00	▶ 총평 및 폐회	사회자

- 참석자 : 40명(인권담당 공무원(서울시,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시 등), 고려대학교, 한국인권재단, 인권 위원, 인권센터 시민위원 등)

○ 주요내용 및 제언

-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분야별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제도로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규칙 보완, 운영 지침 및 매뉴얼 제작 필요
- 인권영향평가 운영 과정을 일종의 인권교육과정으로 운영
-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 및 문제점 공유, 발전 방향 논의

2017년 인권센터 시행계획(고유과제)

1. 인권도시 역량 강화

현황분석 및 실태

- 지방 정부 인권제도화에 대한 관심 상승 및 전문성 요청
 - 2012년 인권조례 제정 권고 이후 지방 정부의 인권제도화는 꾸준히 확산
 - 조례 제정 뿐 아니라 전담부서 설치, 인권교육 등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
 - 국민의 삶에 밀착된 인권제도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체계로 제도화 실행 요구
 -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행정 전문적 분야 심화 필요
 - 상위법의 제정, 행정 가이드라인, 행정 매뉴얼의 개발 필요

- 실질적 인권거버넌스 확대 강화 및 실질적 주민인권 증진에 기여
 - 실질적 인권거버넌스를 통한 내실있는 인권증진 활동 강화
 - 인권위원회의 거버넌스 강화 및 인권센터 시민위원 운영 활성화
 - 인권제도화에 따른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속가능화의 실질적 기반 구축
 - 분야별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 주민의 인권증진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 인권도시 간 연대와 협력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지속적인 인권담론 확산 및 인권행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상시적으로 정보 공유, 국내외 협력과 연대의 장 마련 절실
 - 인권제도화 선도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구의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타 지자체의 관심과 요청 쇄도
 - 바르셀로나 중심의 유럽인권도시회의(21개국 235개 도시), 미국 피츠버그와 워싱턴 DC 중심의 미국인권도시네트워크 등 지역 내 인권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 사회에서 지자체 인권제도화를 알리는 공동의 협력과 역할 분담 필요

《 2017 추진방향 》

- 실질적 인권거버넌스 강화로 구민인권증진 기여
- 인권제도화 구현을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 행정 매뉴얼 개발
- 인권도시 간 협력과 연대 강화로 인권담론 확산 계기 마련

□ 사업목표

- 실질적 인권거버넌스 확대 및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활성화 제고
- 분야별 인권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실질적 주민 인권증진 기여
- 상설적 인권전시관 운영 및 인권기획 전시를 통한 인권문화 확산

□ 사업개요

- 인권센터 기능 강화
- 인권위원회의 거버넌스 강화
- 분야별 인권실태조사 실시
- 인권전시관 운영

□ 추진실적 및 성과

① 인권센터 기능강화

- 인권센터 시민위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위촉 및 구성 : 13명 시민위원, 임기 2년, 연임 1회(2015. 7. 27)
 - 분기별 정례모임 : 5차 정례회 개최
 - 활동 1주년 평가워크숍 : 외부 전문가 기조 발제 및 시민위원 평가 발제(2016.9.30)

○ 인권침해 상담 진정 업무

- 인권침해 상담 및 진정 업무 개요

구분	상담				진정			기타	합계
	소계	방문	전화	기타	소계	결정	취하		
2016	3	3	0	0	2	1	1	0	5

- 진정사건 결정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내용
16-진가-00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권침해	시정권고결정

② 인권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 주요기능

-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등의 권고
- 주민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 인권센터의 활동에 관한 자문과 평가
- 실태조사, 인권교육에 관한 자문 등

○ 운영시기 : 매월 정례회(둘째주 수요일) 및 임시회 개최(현재 39차 정례회)

○ 심의내용(누계)

- 자치법규 및 사업 등 인권영향평가 123건, 권고 35호, 의견표명 5건

○ 인권위원회 구성 및 출범 현황(3기)

- 인원 : 20명(남자 9명, 여자11명)
- 구성분야 : 교육, 아동, 노동, 주거, 여성, 장애 등
- 모집방법 : 구의회, 단체, 위원회 추천 및 주민공개모집

③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실시(전국 자치구 최초)

○ 용역개요

- 기간 : 2016. 4. 27.~ 9. 15.
- 수행기관 : 인권정책연구소(소장 박종화)
- 용역금액 : 26,480,000원

○ 주요과업

- 일반 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실태 파악
- 지역적 특성 및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아동 청소년 인권 증진 전략 및 과제 도출
- 아동청소년 인권의식 향상 방안 강구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 추진경과

- 2016. 4 실태조사 용역 계약 체결((사)인권정책연구소)
- 2016. 5. 9 착수보고회
- 2016. 8. 4 중간보고회
- 2016. 8. 18 공청회
- 2016. 8. 25 최종보고회

○ 조사결과

- 아동·청소년, 시민공공영역종사자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기초분석
- 그룹면접조사 결과(빈곤, 성소수자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청소년)
- 성북구 아동청소년 정책분석 및 심화분석결과
- 시사점 및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제안(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성북, 아동놀이터 성북, 청소년 성북 프리존, 우리 마을 성북, 성북 인권교육 체험관 등)

④ 인권전시관 조성

○ 전시관 개요

- 시 설 명 : 인권전시관
- 위 치 : 성북구 안암동 2가 140(안암동주민센터)
- 규 모 : 지상4층, 42.79m²

○ 추진경과

- 2016. 3월 : 인권전시관 조성 사업계획 수립
- 2016. 5월 : 착수보고회
- 2016. 7. 19 : 개관식

○ 2016년 전시개요

- 전 시 명 : 어린이 인권 미디어 놀이터
- 주요내용 : 미디어체험 인권 블록 맞추기, 인권웰, 비밀의 방 등

⑤ 인권백서 발간

- 추진근거 : 인권조례 제15조 (2년마다 발간, 제1호 : 2014. 4. 발간)
- 발간내용 : 해당기간(2014년~2015년) 추진하였던 인권정책 관련 사업
- 발 간 일 : 2016. 9월
- 주요내용
 - 인권센터 및 주요활동 소개(2011~2015)
 - 세부내용 : 인권축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시민위원, 청소년노동인권,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안암동인권청사

⑥ 인권도시협의회 구성

○ 추진방향

- 도시(행정)에 대한 인권적 접근 공동 개발 및 공무원 인권교육 공동 개발
- 지방정부의 소수자 보호 정책과 전략 개발
- 중앙정부에 대해 도시(지방정부)의 권리 공동 대응

○ 추진경과

- 제2회 한국인권회의의 “지역사회와 인권 - 현황과 과제” 참여 (2016. 3. 24)
-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준비모임 1차 (2016. 7. 5)
- 세계인권도시포럼 참여 (2016. 7. 21)
-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준비모임 3차 (2016. 10. 26)

□ 추진계획

○ 인권센터 시민위원 운영 활성화

- 정례회 개최 및 지속적인 인권학습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역량 강화 등 인권 모니터링 활동력 강화

※ 2017. 7월 : 인권센터 시민위원 임기 만료(2기 시민위원 구성 및 출범)

- 사업비 : 5,096천원(인권센터 시민위원 수당)

○ 인권침해 상담 진정 업무 추진

○ 인권도시지방협의회 구성

- 인권행정 및 인권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전문성 구축
- 인권제도화 발전을 위한 공동의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 공동사업(안)

- 지방정부 인권행정 구축 : 전담부서 실무자 인권워크숍, 인권제도 구축, 인권교육
- 주민참여 인권문화 확산 : 인권제도화 및 인권행정 과정에 당사자 및 주민참여 방식 개발(주민인권지킴이단 등), 읍면동 단위 지역 인권문제 발굴 및 해결 참여
- 인권문화 확산 : 인권축제(세계인권선언일, 38여성의날, 아동인권기념일-어린이날, 아동인권권리협약 11.20 등), 인권영화제 및 인권기행
-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 인권실무자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전국, 권역별 추진), 인권전문가와 연대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인권위원회 네트워크 구축, 해외 인권도시와 교류·협력 추진

- 사업비 : 1,000천원(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 인권위원회의 거버넌스 강화

- 운영시기 : 매월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 위원구성 : 20명(2016. 9. 18. 3기 인권위원 위촉 및 출범)
- 운영내용 : 자치법규 및 사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심의·자문,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등의 소위원회 구성

○ 분야별 인권실태조사 실시

- 추진근거 : 인권조례 제6조(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 전략 수립, 인권취약 집단의 인권증진 방안 마련)
- 추진방법 : 공개입찰(과업 협상)에 의한 민간 위탁
- 조사내용 : 인권취약계층 우선 대상 및 분야 선정 후 인권실태조사

○ 인권전시관 운영

- 사업내용 : 안암동 주민센터 4층 전시관에서 인권관련 체험 전시 등 기획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인권센터 시민위원 운영 활성화	6	6	6	6
○ 인권위원회의 거버넌스 확대	10	10	10	10
○ 인권실태조사 실시	1	1	1	1
○ 인권백서	1	-	1	-
○ 인권전시관 운영	1	1	1	1
○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	2	2	2
총사업비 : 57.8백만원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인권센터 시민위원 운영 활성화	2	1	2	1
○ 인권위원회의 거버넌스 확대	3	2	3	2
○ 인권실태조사 실시			1	
○ 인권백서	-	-	-	-
○ 인권전시관 운영		1회		
○ 인권도시지방정부협의회	1회		1회	
사업비 : 57.8백만원				

2. 인권교육 활성화

현황분석 및 실태

- 인권증진기본조례 제10조 인권교육 실시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및 직무연계성을 고려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제고
 - 복지시설종사자 및 사회적경제 주체를 위한 인권교육의 경우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을 인권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육내용에 관심도가 높음
-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및 자발적 참여
 -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자발적 참여, 사회적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 제고
 - 지역사회 인권수준 향상 및 인권존중 사회분위기 조성

《 2017 추진방향 》

-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인권교육 전략화 기능 제고
- 인권교육 대상자 모집 및 홍보 기능 강화
- 조직 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 강화

사업목표

-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직무연계성 제고
- 주민인권교육의 시민교육화 추진
-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 마련

사업개요

- 공무원 인권교육
- 복지시설종사자 및 사회적경제주체를 위한 인권교육
- 주민인권학교
- 인권특강

□ 추진실적 및 성과

① 공무원인권교육

○ 직원인권영화 관람

- 상영영화 : <귀향> <4등>
- 교육장소 : 아리랑 씨네센터
- 일 정 : 2016.3.7.~ 8, 5.27~30

○ 직원인권아카데미(사회복지분야) 추진실적

- 교육기간 : 2016.11.8.(화)/11.15(화).(총4강, 14:00~18:00)
- 교육장소 : 성북배움터
- 교육수료 : 3강 이상 수료 시 8시간 교육인정(사회복지분야 4시간 인정 포함)
- 교육내용 : “성북구, 인권에 물들다”

② 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 수료 현황

연도	계	종합사회 복지관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기타 복지시설	기타
2016	102명	9	29	5	35	3	9	12

○ 교육내용

연도	구분	교육일시	교육내용		강사	수강인원
2016	7기	3.9(수)	1강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참정권	김재왕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65명
			2강	사례 중심 참여 학습	김성연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8기	'10.11(화)	1강	인간답고 지속가능하게 살려면 안전과 환경에 차이를 중심으로	하승수 (변호사)	37명
			2강	아동 학대 사례에 대한 법적 개입	김영주 (법무법인 도담)	

③ 주민인권학교

○ 9기 주민인권학교

- 주 제 : 인권으로 생각하는 습관
- 일 시 : 2016.4.20.(수) ~ 5.10(화)(총4강, 저녁 7~9시)
- 장 소 : 성북구청 3층 배움터

- 추진실적 : 69명 접수 / 27명 수료

- 강의내용

회차	일시	강의주제	강사
1강	4.20(수)	인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꾸는 법	한인섭(서울대 법학대학 교수)
2강	4.26(화)	외모와 인권	서민(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3강	5. 3(화)	여성과 인권	소라미(공익인권법 재간 공감, 변호사)
4강	5.10(화)	놀이로 보는 인권	방승호(아현정보산업학교 교장, 모험상담사)

○ 10기 주민인권학교

- 주 제 : 인권해도 괜찮아

- 일 시 : 2016.10.27.(목)~11.17(목)(총4강, 매주 목, 저녁 7~9시)

- 장 소 : 성북구청 3층 배움터

- 강의내용

회차	일시	강의주제	강사
1강	10.27(목)	영화 「비밀은 없다」, 감독이 들려주는 인권이야기	이경미(영화감독)
2강	11.03(목)	인권이란 무엇인가	조효제(성공회대 교수)
3강	11.10(목)	여성과 인권, 여성혐오 논란을 넘어	엄혜진(여성학 박사)
4강	11.17(목)	어린이에게 놀 권리는 생존권이다.	편해문(놀이터디자이너)

□ 추진계획

○ 공무원 인권교육

- 집중그룹을 위한 참여형, 중/소규모 인권교육 실시

-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보건, 재건축·재개발 등 사회적 약자 및 인권 관련 비중의 높은 부서별로 그룹핑하여 실시

- 상·하반기 인권아카데미, 영화감상, 특강 실시(※ 사회복지교육의무 이수 연계 진행)

○ 사이버 인권교육

- 일 정 : 2017. 1월~12월(매월 개강, 개별 신청)

- 대 상 : 전 직원

- 교육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원격강의 방식으로 전 직원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인권의 이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노인관련 시설에서 노인과 인권, 행정과 인권, 장애예방과정 등

○ 복지시설종사자 · 사회적경제 주체 인권교육 실시

- 일 정 : 2017. 3월, 10월(연 2회, 회당 2강)
- 대 상 : 관내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종사자
- 교육인원 : 회차별 50명
- 교육방법 : 강의 및 토론형식 교육
- 교육내용 :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기본적 소양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 문제 나누고 해결하기, 인권옹호자로서의 권리 찾기 등

○ 주민인권학교

- 일 정 : 2017년 4월, 10월(연 2회, 회당 4강)
- 대 상 :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교육인원 : 회차별 50명
- 교육방법 : 인권전문가 및 교수진 강의, 토론식, 인권영화관람, 인권기행 등
- 교육내용 : 인권의 기본 개념, 인권이슈 등
- 사후조치 : 인권학교 수료생 모임 등 추진

○ 인권특강

- 일 정 : 2017년 상하반기 각 1회(회당 2강)
- 교육내용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권이슈 및 대상을 선정하여 진행
- 교육인원 : 회차별 40명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공무원인권교육	2	2	2	2
○ 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2	2	2	2
○ 주민인권학교	2	2	2	2
○ 인권특강	2	2	2	2
총사업비 : 13.4백만원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공무원인권교육	1	-	1	-
○ 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1	-	1	-
○ 주민인권학교	-	1	-	1
○ 인권특강	-	1	-	1
사업비 : 13.4백만원				

3. 인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

현황분석 및 실태

- 자치법규 제·개정, 대상정책 인권영향평가 실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27조
 - 조례 제·개정 시 자치법규 123건, 조례에 관한 권고 25건 중 수용률 80%
 - 자치법규 심의 및 수용 현황(2016.10월 현재)

심의	권고	수용률			
		수용	부분수용	유보	미수용
123건	26건	9건	7건	4건	6건

- 인권위원회,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등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인권영향평가 전문화 필요성 대두
 - 건축, 법률, 주거, 장애 등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행정업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
- 인권도시협의회 등을 통한 인권영향평가 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사업으로 연대하여 확산 계기 마련

《 2017 추진방향 》

-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통한 거버넌스 확대 실시
- 인권영향평가 전문화를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 인권도시협의회 등을 통한 연대로 인권영향평가 확산 계기 마련

□ 사업목표

- 자치법규 및 대상정책 인권영향평가 지속 실시
- 재개발 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시범 실시
-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인권영향평가 전문화 및 실질적 행정제도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조례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 공공건축물 건립 인권영향평가
-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2018년 세입세출(안) 인권영향평가

□ 추진실적 및 성과

○ 자치법규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해 체크리스트(5개 항목)에 따라 담당자 자가진단 → 감사담당관 결과점검 → 인권위원회 결과심의
- 추진실적 : 총 123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 평가 실시
- 평가현황(2013~2016년)

심의	권고	결과			
		수용	부분수용	유보	미수용
123건	26건	9건	7건	4건	6건

- 평가내용(2016년)

번호	조례명	담당부서	결과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행정과	원안동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행정과	원안동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조례	의약과	조정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문화체육과	해당없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세무1과	원안동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세무1과	원안동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과	원안동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관리과	권고33호
9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화체육과	권고34호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마을경제정책과	원안동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마을경제정책과	원안동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세무1과	원안동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세무1과	원안동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건강관리과	원안동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감사담당관	조정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감사담당관	원안동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세무1과	원안동의

번호	조례명	담당부서	결과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기획예산과	원안동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지적과	조정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同幸)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	주택정책과	권고35호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환경과	원안동의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원안동의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재무과	조정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추진(2016.1~12월)

- 구성 명단

연 번	분 야	성 명	비 고
1	교수	이경선	홍익대 교수, 안암동 인권청사 인권감리단
2	건축가	이성석	하우제건축사사무소 대표
3	인권전문가	이윤하	안암동 인권청사 인권감리단, 성북구 인권위원회
4	건축가	정기황	도시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창조도시위원회
5	인권센터	김정아	인권센터장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인권영향평가

- 일 시 : 2016.3.29.(화) 18:00~19:30

- 검토의견

- 인권 및 공공성 증진계획 항목 반영
- 유보지 10%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기준 반영
- 전 층 통합형 장애인 화장실로 내용 보완
- 여성주차장 40%, 확대주차장 30% 설치 반영

○ 『장위구립도서관과 문화복지타운 건립

- 일 시 : 2016.10.5.(수) 14:00~16:00

- 검토의견

- 지하주차장 회전반경 확보
- 휠체어 동선 검토 및 적정 복도폭 확보 검토
- 가변적인 공간 구획 구성
- 앞마당과 뒷마당 내부 통과 동선 마련 등

○ 행정대집행 계획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일 시 : 2016.8.9.~8.16
- 방 법
 - 행정대집행 계획 관련 공문 내용 검토, 현장 방문조사, (구)재개발 인권영향평가단 소속 변호사 자문, 인권위원회 심의 등
- 검토의견
 - 행정대집행 집행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원상복구를 위한 충분한 기회 및 협상기회 제공에 대한 점검 필요
 - 대집행 대상점포 피고용인에 대한 별도 고지 조치

□ 추진계획

○ 대상정책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일 시 : 연중 실시
- 대 상 :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재개발 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시범 실시

- 추진 방법 :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 및 인권위원회 심의
- 기대 효과
 -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참여 증진
 -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 유도
 -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비 : 100,000천원(전액시비)

○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일 시 : 2017년 12월
- 대 상 : 선거사무 및 118개 투표소(사전투표소, 투표소)
- 방 법 : 해당 부서와 협업하여 사전검토 및 현장 실사

○ 2018년 세출예산(안)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일 시 : 2017.11월
- 대 상 : 2018년 세출예산(안)의 구비 3억 이상 사업
- 방 법 : 평가 및 검토 후 구의회 및 인권위원회에 평가서 제출
- 사후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권고

□ **세부 추진목표**

① **연차별 계획**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대상정책 인권영향평가	30	30	30	30
○ 재개발 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시범 실시		2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	2	2	2	2
○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인권 영향평가 실시		1	1	1
○ 2018년 세출예산(안) 인권영향평가 실시	1	1	1	1
총사업비 : 100백만원(전액시비)				

② **2017년 계획**

구 분	1/4	2/4	3/4	4/4
○ 대상정책 인권영향평가	25	50	75	100
○ 재개발 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시범 실시	25	50	75	100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	25	50	75	100
○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실시				100
○ 2018년 세출예산(안) 인권영향평가 실시				100
사업비 : 100백만원(전액시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패션섬유봉제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섬유봉제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의 일정한 형식을 말한다.
2. “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봉제업체”란 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이거나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 또는 구 관내 사업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지원센터 등

제5조(지원센터 등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섬유봉제지원센터 등(이하 “센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사업)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직을 원하는 구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
2. 패션섬유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
3. 패션섬유봉제산업 공동작업장 설치 및 환경개선지원 등
4. 패션섬유봉제기술 및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의한 판로 개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행정인력과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비 등)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로부터 교육훈련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비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의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자료 : 조례안]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 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 분야 사업실적 등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공동작업장 이용 등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공유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의 일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관리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붙임자료 : 조례안]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정·폐지의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패션섬유봉제산업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붙임자료 : 조례안]

1. 패션섬유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결정
3. 센터의 교육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의회 의원
2. 패션섬유봉제업무관련 부서장
3. 구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의류·봉제)업체의 대표
4. 패션섬유봉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붙임자료 : 조례안]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4.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이나 날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①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 ②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붙임자료 : 조례안]

④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제19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훈련비의 기준

(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교육훈련비	50,000원/월	실습재료비 포함